



County of San Diego

NICK MACCHIONE, FACHE
AGENCY DIRECTOR

HEALTH AND HUMAN SERVICES AGENCY
PUBLIC HEALTH SERVICES
3851 ROSECRANS STREET, MAIL STOP P-578
SAN DIEGO, CA 92110-3134
(619) 531-5800 • FAX (619) 542-4186

WILMA J. WOOTEN, M.D.
PUBLIC HEALTH OFFICER

공중 보건 책임관 명령

(코로나 19 확진자 및 감염 의심자 격리 조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2019 (COVID-19)의 확산은 공중 보건에 상당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샌디에이고 카운티는 현재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으로 인해 지역 보건 비상 사태 공표와 지역 위급 사태를 선포하였고,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비상 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코로나 19의 감염 위험에 처하지 않은 사람은 없으며, 더욱이 일부 연령 또는 기저 질환자는 감염 시 심각한 질병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고위험군에 속합니다. 샌디에이고 카운티의 공중 보건 책임관 (보건 책임관)은 코로나 19의 확산 속도를 늦추고 샌디에이고 카운티의 의료 서비스 체계가 과부하 되지 않도록 코로나 19 확진자 또는 감염 의심자의 격리 조치를 요청하는 바랍니다.

이에, 공중보건 책임관은 캘리포니아 공중 보건 및 안전법 제 101040 항, 제 120130 항, 제 120175 항, 제 120215 항, 제 120220 항 및 제 120225 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명령하는 바랍니다.

1. 코로나 19 확진자 또는 감염 의심자는 즉시, 다음의 수칙을 이행해야 합니다.

a. 자택 또는 기타 거주지에서 자가격리를 실행합니다. 집단 거주 환경, 호텔 또는 복합주택 환경에서 자가격리를 하는 경우에는 건물 내 격리 기간 중 한 공간(방)에서 다른 공간(방)을 출입하지 말아야 합니다. 필요한 진료를 받을 시에는 격리 장소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b. 공중 보건 책임관과 의료 제공자는 모든 사항을 유념하여 수칙을 따라야 합니다. (자택 격리 지침서 사본은 카운티의 코로나 19 웹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sandiegocounty.gov/content/dam/sdc/hhsa/programs/phs/Epidemiology/COVID%20Home%20Isolation%20Instructions%20for%20COVID-19_Korean.pdf)

c. 공중 보건 책임관의 예방 격리 명령에 명시된 바와 같이, 밀접 접촉한 모든 사람에게 연락하여 확진자와 마지막으로 접촉한 날로부터 5 일 동안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고 고지해야 합니다.

i. 공중 보건 책임자의 격리 명령은 카운티 코로나 19 다음의 웹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 https://www.sandiegocounty.gov/content/dam/sdc/hhsa/programs/phs/Epidemiology/COVID-19%20Home%20Quarantine%20Guidance_Korean.pdf.
- ii. 코로나 19 감염자 또는 감염 의심 밀접 접촉자로 간주되는 경우, 해당 개인의 감염 증세가 발생하기 48 시간(또는 무증상 환자의 경우, 검체 채취 검사일로부터 이를 전) 이내에서 해당자의 격리 해제될 때 까지의 기간 동안, 그들은
- 코로나 19 감염자 또는 감염 의심자와 24 시간 기준 6 피트 이내의 거리에서 총 누적 시간 15 분 이상 함께 있었던 경우; 또는
 - 자신을 보호하지 않은 상태에서 코로나 19 감염자 또는 감염 의심자의 체액 및/또는 분비물(본인에게 기침이나 재채기를 하였거나, 코로나 19 확진자 또는 감염 의심자와 같이 식기용기 또는 식사도구를 공유하거나 사용한 행위를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음)을 접촉한 경우.
- d. 다른 모든 사람과 6 피트 거리를 유지해야 하며, 진료 의료인, 본 명령 집행 법 집행관, 공중 보건 책임관 대리인, 공중 보건 책임관의 특별 승인을 받은 자, 또는 간병인은 제외됩니다.
2. 코로나 19 감염자 또는 감염 의심자는 반드시 자가 격리를 해야 합니다. 다음의 기준 사항 중 한 개 이상 해당하는 자는 즉시 자가 격리를 실행해야 합니다.
- a. 코로나 19 진단 검사 결과 양성 판정; 또는
 - b. 코로나 19 감염 증상과 일치하는 징세 및 증상 (예: 기침, 숨가쁨 또는 호흡 곤란, 또는 피로, 발열, 오한, 근육통 또는 몸살 증상, 두통, 인후염, 미각 또는 후각 상실, 또는 코막힘이나 콧물, 메스꺼움 또는 구토, 또는 설사); 또는
 - c. 진료 의사로부터 코로나 19 감염이 의심된다고 통보를 받은 자.
- 해당자는 코로나 19 감염자 또는 감염 의심자로 타인에게 바이러스를 전염시킬 수 있으므로 반드시 격리되어야 합니다. 해당자는 다른 사람과의 격리를 통해 코로나 19의 확산을 예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노인 및 기저 질환이 있는 사람 등과 같이 질병에 걸릴 고위험군을 보호합니다.
- 해당자는 격리 기간 동안 의사, 공중 보건 책임관 또는 책임관의 승인을 받은 개인들의 의료 관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합니다.
3.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본 명령은 계속 유지됩니다:

- a. 유증상자(반복 검사 실시)

- i. 증상이 처음 발현한지 적어도 5 일이 경과함 그리고

- ii. 마지막 발열 증세가 지나간 후(해열제를 사용하지 않고) 최소 24 시간이 경과함 **그리고**
 - iii. 5 일 이후에 실시한 반복 진단 검사(PCR 또는 항원 검사)가 음성임 **그리고**
 - iv. 다른 증세가 호전됨
 - v. 이 기간 이후에는 증상이 처음 나타난 후 10 일까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캘리포니아 공중보건부\(CDPH\) 마스크 사용 지침](#)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여타 모든 마스크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b. 유증상자(반복 검사 실시 안 함)
- i. 증상이 처음 발현한지 적어도 10 일이 경과함 **그리고**
 - ii. 마지막 발열 증세가 지나간 후(해열제를 사용하지 않고) 최소 24 시간이 경과함 **그리고**
 - iii. 다른 증세가 호전됨
- c. 무증상자(반복 검사 실시)
- i. 최초로 COVID-19 진단 검사 양성 판정일로부터 적어도 5 일이 경과함 **그리고**
 - ii. 5 일 이후에 실시한 반복 진단 검사(항원 검사 또는 PCR 검사)가 음성임.
 - iii. 최초 COVID-19 진단 검사 양성 판정일 이후 10 일까지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캘리포니아 공중보건부\(CDPH\) 마스크 사용 지침](#)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여타 모든 마스크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d. 무증상자(반복 검사 실시 안 함)
- i. 최초로 COVID-19 진단 검사 양성 판정일로부터 적어도 10 일이 경과함.
격리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필요한 진료 또는 검사를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 격리 장소를 떠나거나 공공 장소나 사적인 장소를 출입할 수 없습니다. 이 섹션에 따라 격리가 종료되더라도 그 자체를 직장이나 학교 복귀를 공중 보건상 허용하는 것으로 간주해서는 안 됩니다.
4. **의료 종사자는** 비상 상황이나 위기 상황을 제외하고는 아래 시점까지 **업무에 복귀해서는 안 됩니다** (참조: [SARS-CoV-2 감염 또는 SARS-CoV-2 노출 의료 인력 관리를 위한 임시 지침\(CDC\)](#) 및 현행 '전체 시설 대상 공문'[CDPH All-Facility Letters]).
- a. 무증상, 경미한 증상이거나 증세가 호전되는 경우
 1. 증상 발현 이후, 또는 무증상인 경우 최초 코로나 19 진단 검사 양성 판정 이후 10 일

2. 백신 완전 접종 상태¹가 아닌 경우, 증상 발현 이후 또는 무증상인 경우 최초 코로나 19 양성 진단을 받은 이후, 업무 복귀 후 24 시간 내에 PCR/항원 검사에서 음성을 받은 경우 7 일 **또는**
 3. 백신 완전 접종 상태인 경우, 증상 발현 이후 또는 무증상인 경우 최초 코로나 19 양성 진단을 받은 이후, 업무 복귀 후 24 시간 내에 PCR/항원 검사에서 음성을 받은 경우 5 일
- b. 중증 또는 위험 질환이 있는 의료 종사자는 아래 시점까지 업무에 복귀해서는 안 됩니다.
1. 증상 발현 후 20 일 **그리고**
 2. 마지막 발열 증세가 지나간 후(해열제를 사용하지 않고) 최소 24 시간이 경과함 **그리고**
 3. 다른 증세가 호전됨
- c. 중등도에서 중증의 면역 저하 병력이 있는 의료 종사자는 위의 조건 외에도 직장 복귀 전에 내부의 직무 보건 상담이 필요합니다.
- d. 비상 사태 또는 심각한 인력 부족이 있는 의료 시설은 이러한 조건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의료 시설의 이행 상황은 해당 캘리포니아 공중보건부 규정 및 '전체 시설 대상 공문'(All-Facility Letters, AFL)에 따라 결정됩니다. [의료 인력 부족 완화 전략\(CDC\)](#)을 참조하십시오.
5. 고위험 집단 생활 환경을 포함하여 특정 환경에서 거주, 근무하거나 학교에 다니는 사람, 그리고 심각한 면역 억제 환자를 다루는 사람들에게는 다른 제한 사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적용 가능한 모든 주 및 연방 규정 외에도 다음 문서에서 자세한 내용을 검토하십시오.
-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if-you-are-sick/quarantine.html>
-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vaccines/fully-vaccinated-guidance.html>
-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hcp/infection-control-after-vaccination.html>

¹ 2 회 접종 백신(화이자-바이엔텍 또는 모더나)의 2 차 접종 후 2 주 이상, 또는 단일 접종 백신 (존슨앤존슨/얀센) 접종 후 2 주 이상이 된 사람들은 코로나 19 백신 완전 접종 상태로 간주합니다. 그러나 2 회 접종 백신(화이자-바이엔텍 또는 모더나)의 2 차 접종 후 **6 개월 이상** 경과했거나 1 회 접종 백신(존슨앤존슨/얀센) 접종 후 **2 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 추가접종(Booster)을 받아야 백신 완전 접종 상태로 간주합니다.

<https://www.cdph.ca.gov/Programs/CHCQ/LCP/Pages/AFL-21-08.aspx>

<https://www.dir.ca.gov/dosh/coronavirus/COVID19FAQs.html#vaccines>

<https://www.cdph.ca.gov/Programs/CID/DCDC/Pages/COVID-19/K-12-Guidance-2021-22-School-Year.aspx>

a. 경증*에서 중등증*까지 이르는 면역력이 심하게 손상되지 않은 사람으로서:

- i. 증상이 처음 발현한지 적어도 10 일이 지나고 **그리고**
- ii. 마지막 발열 증세가 지난 후(해열제를 사용하지 않고) 최소 24 시간이 경과
그리고
- iii. 다른 증세가 호전됨.

b. 중증*에서 중병*까지 이르는 질환자 또는 면역력이 약화된* 사람으로서:

- i. 처음 증상이 발생한지 적어도 **10 일에서 20 일**이 경과했고 **그리고**
- ii. 마지막 발열 증세가 지난 후(해열제를 사용하지 않고) 최소 24 시간이 경과하였으며,
그리고
- iii. 증상 (예: 기침과 호흡곤란) 이 호전된 개인.
- iv. 개인의 의료 서비스 제공자 또는 감염 통제 전문가와 상의하도록 권합니다.

c. 면역력이 심하게 손상되지 않은 무증상자*.

- i. 감염 기간 내내 아무런 증상이 없는 사람은 첫 번째 코로나 19 양성 진단 결과 검사일로부터 최소 10 일이 경과했을 때 격리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d. 면역력이 심하게 손상된 무증상자*.

- i. 감염 기간 내내 증상이 없었던 면역력이 심하게 손상된 사람은 첫 번째 코로나 19 양성 진단 결과일로부터 최소 10 일에서 20 일이 경과했을 때 격리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 ii. 개인의 의료 서비스 제공자 또는 감염 통제 전문가와 상의하도록 권합니다.₩

* 경증, 중등증, 중병, 최고 위험에 대한 정의 및 소아환자와 면역력 손상자에 대한 구체적 정보는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hcp/disposition-hospitalized-patients.html>.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때까지 개인은 필수 진료 또는 검사를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 격리 장소를 벗어나거나 다른 공공장소 또는 사적인 장소를 출입할 수 없습니다.

6. 본 명령을 위반하거나 준수하지 않은 자는 경범죄에 해당하는 징역, 벌금형, 또는 두 가지 처벌이 모두 적용될 수 있습니다(캘리포니아 공중 보건 및 안전법 제 120275 항 및 제 120295 항). 본 명령은 전염성 질병의 전염, 감염성 또는 확산(캘리포니아 정부법 제 26602 조 및 제 41601 조,

캘리포니아 보건 및 안전법 제 101029 조)을 막기 위해 관할 지역 내 모든 법 집행관이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명령을 발행하는 바입니다.

일자: 2022년 1월 3일

Wilma J. Wooten, M.D., M.P.H.
(윌마 J. 우튼, 의학박사, 공중보건학 석사)
Public Health Officer (공중 보건 책임관)
County of San Diego (샌디에이고 카운티)